

#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13 집

 언론중재위원회

## 발 간 사

2005년도는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민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 피해구제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그 절차, 내용에 있어서 보다 효율화하고 언론환경의 시대적 변화추세에 부응키 위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청구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고, 중재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정보도의 청구에 있어서 언론사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조정과 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언론보도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 법 시행 후 2006년 6월까지 종전과 같은 청구외에 손해배상청구 263건, 인터넷 언론보도 대상 청구 85건이 접수 처리되었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법원 제소도 29건이 되어 우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증대되었고, 그 만큼 우리의 책임 또한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년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모아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각 급 법원이 내린 반론보도청구 6건, 정정보도청구 3건, 손해배상청구 32건, 기타 2건 등 43건을 추려서 제13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판결집이 우리 위원회는 물론 언론수요자나 종사자, 관련연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언론문화정착을 위한 보다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 차 례

## I 반론보도청구사례

1.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다  
주식회사 경인방송 대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기5171) ..... 13
2.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방송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론보도하라  
경상남도 합천군 외 1인 대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1724) ..... 18
3. 특허심사의 적법성 여부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라  
특허청 대 주식회사 법률신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기9504) ..... 23
4. 기사 내용이 언론사의 의견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국정홍보처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1669,  
서울고등법원 2001나67203, 대법원 2002다49040) ..... 27

## II. 정정보도청구사례

1. 보도 내용이 설령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장○○ 대 한국방송공사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4245) ..... 44
2. 해당 회사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과 정황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보도 내용의 진실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김○○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052) ..... 53
3. 방송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군인공제회 대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4834) ..... 65

## III. 손해배상청구사례

1. 범죄사실 보도의 공익성이 널리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다면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대 대한민국 외 3인 (인천지방법원 2002가합9215, 서울고등법원 2004나2610, 대법원 2004다53425) ..... 73
2.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사 상호간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은 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방송의 전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7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7132, 서울고등법원 2005나16395) ..... 93
3. 국정원의 도·감청 가능성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다 <b>곽○○ 외 4인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5인</b> <b>(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67395)</b> .....	116
4. 보도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b>유○○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단29613)</b> .....	122
5. 사생활 침해에 있어 수인해야 할 범위가 큰 공인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또는 밀접한 관련자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 진실성이나 진실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b>왕○○ 외 1인 대 주식회사 뉴시스 외 2인</b> <b>(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2527)</b> .....	128
6. 원고를 고소한 당사자가 제시하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b>윤○○ 대 주식회사 경남도민일보사 외 1인</b> <b>(창원지방법원 2004가단55233)</b> .....	137
7.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b>이○○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2인</b> <b>(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2875)</b> .....	144
8.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b>전○○ 대 오연호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2966)</b> .....	154
9.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대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7227) .....	168
10.	원고인 언론사에 대한 평가나 논평이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피고의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 김우식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2896) .....	180
11.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방송내용에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김○○ 대 한국방송공사 (서울고등법원 2005나10977) .....	187
12.	원고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2004총선시민연대 외 18인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9071) .....	193
13.	원고가 북한군과의 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기사는 피고가 기울인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자료나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 외 3인 대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서울고등법원 2004나65338) .....	212
14.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사진 및 이름을 피고 회사광고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전○○ 대 국가영상예술원○○○○아카데미 주식회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4950) .....	222
15.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윤○○ 대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9990) .....	225

16.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했던  
본래 의미의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강○○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739)** ..... 241
17.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코미디언으로서의 대중적 지명도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 대 주식회사 ○○○코리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35324)** ..... 248
18.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다루어진다면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남○○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6767)** ..... 253
19. 기사에 제시된 사실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고등법원 2004나84063)** ..... 259
20.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이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일 경우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2856)** ..... 272
21. 일부 보도 내용 중에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자극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인 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7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85035) ..... 279
22. 프로그램의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이 방송 전체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조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2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2605) ..... 299
23. 보도 내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김○○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56802) ..... 320
24. 언론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코리아 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6111) ..... 328
25. 지면의 제약과 편집기술 상 보도자료에 나온 적발업체 중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적발업체만 보도할 수 밖에 없다는 언론사들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장○○ 대 주식회사 연합뉴스 외 4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70004) ..... 335
26. 발언의 일부를 취사선택해 보도함으로써 취재 상대방에게 큰 비난이  
초래되는 경우 취재 상대방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함께  
방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 외 3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3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7829) ..... 339
27.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로 그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b>박○○ 대 한국방송공사 외 1인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8545)</b> .....	350
28. 북한산 건강식품의 진위여부는 국민 보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게시물 및 보도 내용은 공익성이 충분하며 보도의 근거가 된 팩스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b>주식회사 ○○커뮤니티 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6567)</b> .....	357
29. 교회 목사의 보수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김제○○교회 외 1인 대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8950)</b> .....	364

## V. 기타사례

1. 증인이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b>김○○ (전주지방법원 2005고단1203)</b> .....	371
2. 잡지에 게재된 기사와 사진이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대부분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의 취지 및 독자에게 전달하는 인상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b>차○○ 대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1)</b> .....	377

\*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  
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  
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